KOSHA GUIDE

C - 96 - 2014

- (다) 거짓·부당하게 요청하는 경우
- (라) 수급인이 요청한 설계변경 후의 구조가 지나치게 과다 설계된 경우
- (마) 수급인이 요청한 설계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
- (2) 도급인은 상기 (1)의 (나)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설계 자의 추가적인 검토의견을 참고하고, 설계자와 업무상 무관한 전문가의 의 견을 듣고 불승인하여야 하며, 설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은 문서로 갖추어 두 어야 한다.
- (3) 도급인은 상기 (1)의 (다)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대안에 의한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.
- (4) 상기 (3)항의 대안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방법은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로 한다.
- (5) 도급인은 설계변경 불승인과 관련된 서류는 공사준공일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7. 기타 조치 사항

기타 설계변경의 절차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"공사계약 일반조건", 조달청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, 안전행정부 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등의 규정을 따른다.